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단5163628 판결 [하자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239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단5163628 판결

전 문

원고주식회사 대경공영

피고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6. 3. 22.

판결 선고 2016.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금강특수건설 주식회사(이하 '금강특수건설'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아래 각 계약명 기재란 습식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습식공사를 시공하여 아래 각 준공일 기재란 일자에 각 습식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금강특수건설은 각 공사완료일 무렵 피고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1	나노캠텍(주) 안성공장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2012.7.3.	2012. 5. 31.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	7,320,500
2	A 건설공사 중 습식공사	2013.7.1.	2013. 6. 20.	2013. 6. 21.부터 2017. 6.20.까지	5,115,000
3	(주)아이씨디 복지동 및 경비동 증축공사 중 습식공사	2013.1.28.	2012.12.31.	2013. 1. 1.부터 2015. 12.31.까지	12,634,600
4	고요지코코리아(주) 평택공장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2012.7.11.	2012. 6. 5.	2012. 6. 6.부터 2015. 6. 5.까지	8,800,000
5	코오롱패션머티리얼(주) 양주공장 1차 건설공사 중 습식공사	2014.1.21.	2013.12.4.	2013. 12. 5.부터 2017. 12.4.까지	10,120,000

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적용되는 피고의 하자보수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앞면 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게 보수청구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
2.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
3.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범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보증금 지급시기)

① 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각 하자보증책임 기간 내에 아래 각 '하자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자, 금강특수건설에게 각 하자의 보수공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금강특수건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1번 공사에 대하여는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비용 청구를 당하여 원고의 보증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주)을 통하여 64,725,000원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지급하였고, 2 내지 5번 공사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래 '각 하자보수비용'란 기재 비용을 들여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1번 공사	폴리싱타일 박리 등	64,725,000원
2번 공사	3층 회의실, 문서고 천정누수, 3층 연구사무소, MRK 검사실 등 누수	13,200,000원
3번 공사	복지동 옥상누수, 1층 식당 앞 베란다 몰탈 들뜸 등	10,912,000원

1번 공사	폴리싱타일 박리 등	64,725,000원
4번 공사	샤워장 내부코너 벽체2곳, 주방 벽체 3곳, 기타복도주변 2곳 벽체타일보수 깨짐, 연마장 천정철골 기둥 주위 누수로 인한 천정텍스 변색오염발생, 옥상 방수터 미장 크랙발생 및 바닥 크랙발생 등	12,135,200원
5번 공사	주방 벽면 타일, 남자샤워장, 각층 남녀 화장실 타일 각 탈락, 1층(기모동 생산설비 상부) 및 가공동 검사반장실 앞(전기분전반 상부) 각 누수, 옥상 계단 우측 크랙 등	31,3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금원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금강특수건설의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기재된 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각 하자에 대한 견적서 등의 기재 내용, 원고가 금강특수건설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이 지출하였다는 각 하자보수비용이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 액수를 계산하면 이 사건 제1, 2, 4, 5 공사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이 각 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합계

31,355,500원(7,320,500+5,115,000+8,800,000+10,120,000원), 이 사건 제3공사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이 보증금액 이내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 10,912,000원 합계액인 42,267,500원(31,355,500원+10,912,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합계액인 42,2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각 공사의 최종 준공일 다음날인 2013. 12. 5.부터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6. 17.까지 상법에 의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증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2013. 12. 5.부터 2015. 6. 17.까지 사이에 각 보증약관상 보증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각 보증금 지급기일이 이 기간 내에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금강특수건업의 원고에 대한 주관성 축산물공판장 건설공사 중 습식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91,85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민법 제434조 참조),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금강특수건업을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금강특수건업에 대한 하자보수금채권과 금강특수건업의 공사대금채권 91,850,000원에 관하여 이미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상계된 공사대금 채권 이외에 금강특수건업의 원고에 대한 별도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은아